

업 무 보 고

연금개혁특별위원회

업 무 보 고

2026. 3. 18.

재정경제부

순서

I .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평가 1

II . 연금개혁 추진방향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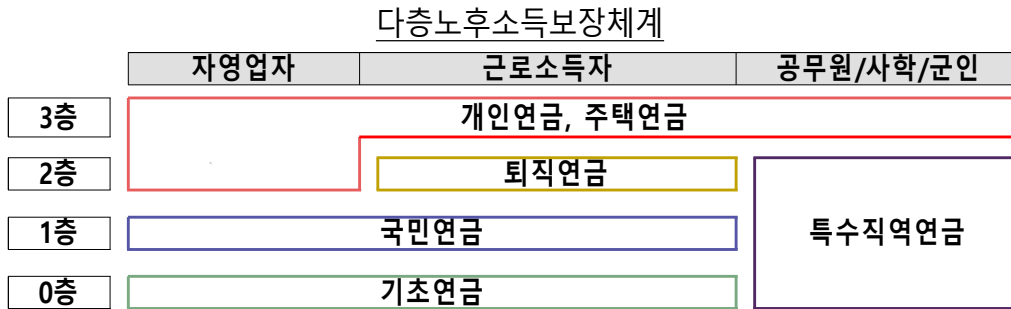
※ [참고]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4

1

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평가

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는 다층적 구조로 설계

- 기초('08)·국민('88) 등 공적연금, 퇴직('05)·개인('94)·주택('07) 등 사적연금, 공무원·군인·교원을 위한 특수직역연금 등으로 구성



② 연금제도가 성숙해지고 있으나, 노후소득 보장 수준은 충분치 못하며,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변화 가속화

- 그간 제도 개선에도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*은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, 노인빈곤율**은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

* 공적연금 소득대체율(OECD, '24년): (OECD 평균) 43.0% (한국) 33.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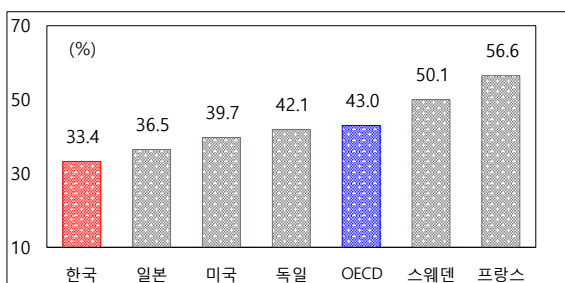
** 노인빈곤율(66세 이상, OECD, '22년): (OECD 평균) 14.8% (한국) 39.7%

- 고령화* 등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지출 수요는 빠르게 증가중이나, 잠재성장률 둔화, 국가채무비율 증가** 등으로 재정여력은 위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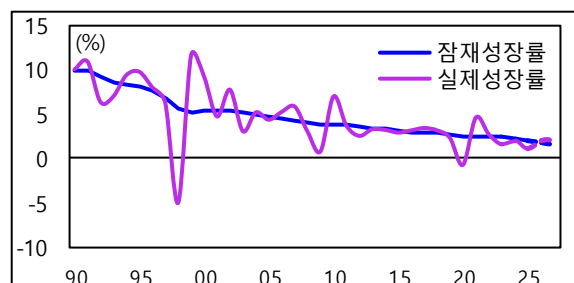
* ('88년 → '25년) [노인비율] 4.7 → 21.2% [기대여명] 70.7 → 83.7세 [출산율] 1.55 → 0.80명

** 국가채무비율 전망('25)49.1 ('35)71.5 ('45)97.4 ('65)156.3 (현재 인구감소 및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기준시나리오의 경우)

공적연금 소득대체율(OECD, '24년)



잠재/실제 성장률 추이



③ 연금 소득 보장을 두텁게 하고,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연금별 구조개혁 노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

① (국민연금) 연금 소득보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'25.3월 제3차 연금개혁*, 기금수익률 개선** 등 추진

* 보험료율 조정(9→13%), 소득대체율 인상(41.5→43%), 군·출산 크레딧 강화 등

** '25년 기금운용수익률 18.82% 기금운용규모(순자산) '24년 1,213→'25년 1,458조원(+245조원)

-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강화하고, 청년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세대간 형평성 제고 필요

② (기초연금) 국민연금을 보완하며 고령층 빈곤 개선에 기여해 왔으나, 고령층 급증에 따라 재정소요* 지속 증가

* 재정지출(국비+지방비, 조원): ('14)6.8 ('17)10.5 ('20)16.7 ('23)22.5 ('26)27.4

- 하위 70% 고령층 모두를 대상으로 경제여건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초연금('26년 단독가구 기준 35만원)이 지급되는 점도 문제점

③ (퇴직연금) 적립금 규모 '18년190→'25년501조원(잠정) 등 빠른 속도로 성장중이나, 수익률과 가입률은 낮은 수준

* '20~'24년 평균수익률 2.86% / '24년 사업장 도입률 26.5%, 근로자 가입률 53.3%

- 지난 2.6일 노사정이 합의*한 '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' 및 '쏠사업장 퇴직급여 의무화'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필요

* '26.2.6, 퇴직연금 기능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

④ (개인·주택연금) 퇴직연금과 함께 공적연금을 보완중이나,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장치로 작동하기 위해 활성화 노력 필요

* (주택연금 가입가구, '25년말) 15만가구 (55세 이상 자가가구의 약 2%)

(개인연금 가입률, '24년말) 근로소득 6천만원 이하 3.4%, 6~8천만원 22.6%

⇒ 국민·기초·퇴직·개인연금 등 연금별 제도개선과 유기적 연계 강화를 통해 보다 두텁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

2

연금개혁 추진방향

① 복지부, 노동부,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적극 추진

○ (국민연금) 제3차 연금개혁, 국정과제 내용 차질없이 추진

구분	주요 내용
크레딧 확대	[출산] (기존) 둘째 자녀 12개월,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 인정 → (개선) 첫째도 12개월 인정,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없이 인정('26~) [군] (기존) 6개월 → (개선) 12개월('26~), 복무기간 전체 검토('27~)
저소득층 보험료 지원	(현행)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 50%를 12개월 지원 → (개선) 월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는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('26~)
첫 보험료 도입	만18~26세 청년('27년 09년생부터) 최초 가입시 보험료 지원 검토('27~)

○ (기초연금) 취약 고령층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,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('26년)

○ (퇴직연금) 민관합동 실무작업반*을 통해 새로 도입된 기금형 퇴직연금 세부 구조를 설계(~'26.7월)하고, 연내 입법 추진

* 정부(노동부, 재경부, 금융위 등), 노사단체(한국노총, 민주노총, 경총, 중기중앙회), 전문가 등

- 사업장 실태조사(~'26.6월)를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 방안을 마련(~'26.7월)하고, 영세·중소기업 지원 등 검토

② 연금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사적연금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 노력 강화

○ 운용규제 완화, 디폴트옵션* 개편, 투자일임 제도화** 등 퇴직연금 운용개선 검토

*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놓은 상품으로 자동 운용('23.7~)

** 시가 자동으로 퇴직연금 운용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시범사업 추진중('25.3.28, 2+2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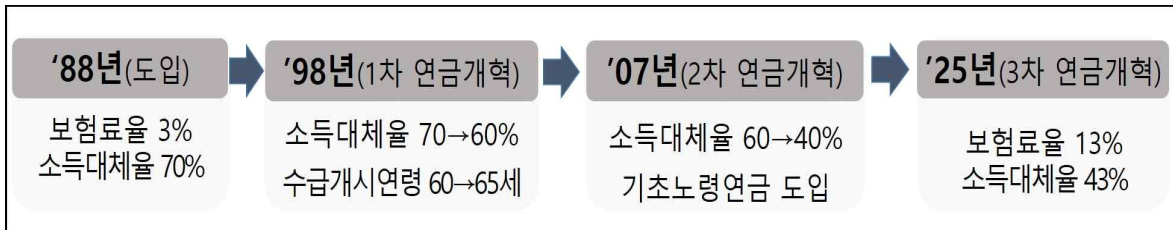
③ 경인사연 등 연구기관과 협업하여 연금제도 개선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방안 지속 발굴

⇒ **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 TF(재경부·복지부 공동 주재) 통해 연금개혁 완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모든 역량 집중·지원**

1. 국민연금

- (도입)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'88년 도입, 전 국민이 의무가입(만 18~59세)하는 노후 준비에 필수적인 제도

< 참고 : 연금개혁 추진경과 >



- (가입) '25.11월 기준 2,198만명 가입
- (기금) 규모 1,458조원('25.12월), 누적 수익률 6.82%('88~'24)
* '25년 기금 수익률 18.82%
- (수급)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, 63세가 되면 노령연금 수령 가능, 수급자수는 751만명(노령연금 634만명, 장애 7.4만명, 유족 110만명)

◆ 3차 연금개혁 주요내용

- ⇒ 기금소진시점 최대 15년 연장('56년→'71년), 누적적자 6,973조원(경상가, ~'93년) 감소
- (모수개혁) 보험료율 9%→13% 인상('26년부터 0.5%p씩 8년간), 소득대체율 '25년 41.5% → '26년 43%로 인상
- (지급보장) 국가 지급보장 규정을 보다 명확화(국민연금법 제3조의2)
- (크레딧)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12개월로 확대·상한(50개월) 폐지 +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로 확대
- (보험료 지원)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 →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지원대상 확대

2. 기초연금

- (도입) '07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도입 → '14년 기초연금제도 도입(기초노령연금 확대·재편)
- (대상)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(소득 하위 70%, '25.12월 기준 701만명)
 - *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
 - (선정기준액) '26년 단독 月 247만원, 부부 395.2만원
 - (기준연금액) '26년 月 349,700원

3. 퇴직연금

- (도입) 퇴직금제도 문제점 개선 및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'05년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정, 퇴직연금제도 도입
- (적립) '25년 말 퇴직연금 총 적립금액은 501조 원(잠정), 주요연금 제도 중 가장 늦게 도입되었으나 가장 빠르게 증가중
- (가입-도입) 가입자 약 697만명(가입대상자(근로시간 1년 이상, 주15시간 이상)의 53.3%), 도입 사업장은 43.5만개(도입률은 26.5% 수준)
 - * 가입률: ('15)48.2% → ('17)50.2% → ('19)51.5% → ('21)53.3% → ('23)53.0% → ('24)53.3%
 - * 도입률: ('15)26.2% → ('17)27.2% → ('19)27.5% → ('21)27.1% → ('23)26.4% → ('24)26.5%

4. 개인연금

- 개인연금은 ①연금저축(세제적격)과 ②연금보험(세제비적격)으로 구분
 - * ①(연금저축-세제적격) 소득세법상 연금소득 요건 충족 상품, ①납입, ②수령 시 세제혜택 부여
 - ②(연금보험-세제비적격)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 면제요건 충족 보험상품, (ii)수령시에만 비과세
- (적립) 적립금 규모는 388.5조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

구분	'20년말		'21년말		'22년말		'23년말		'24년말	
	적립금	증감율	적립금	증감율	적립금	증감율	적립금	증감율	적립금	증감율
세제적격	152.5	6.3%	160.9	5.5%	160.8	-0.1%	168.7	4.9%	180.1	6.8%
세제비적격	207.2	2.6%	208.6	0.7%	194.0	-7.0%	201.1	3.7%	208.3	3.6%
계	359.7	4.2%	369.5	2.7%	354.8	-4.0%	369.9	4.2%	388.5	5.0%